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44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문영민의원 외 13명
나. 제 안 일 : 2017년 4월 5일
다. 회 부 일 : 2017년 4월 7일
라. 상 정 일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4월 2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문영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임신공무원 보호, 육아시간 부여,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자녀의 학교생활에 학부모가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 학교활동 참여를 위한 휴가 및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등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4항 신설).

2) 임산부 모성보호를 위해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승인함(안 제24조제1항 개정).

4)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육아시간 활용도를 제고함(안 제24조제4항 개정).

5)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이용하여 배웅할 수 있도록 관련 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4조제11항 신설).

6)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4조제12항 신설).

7) 3일장 장례문화 및 부모세대 고령화에 따른 장례절차 추진 등 실소요일수를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 3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추진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추진(안) 과 서울시 복무조례 개정(안) 특별휴가 비교>

특별휴가 종류	휴가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추진안	서울시 복무조례 개정안	비 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2일	-	2일 ⇒ 3일	휴가일수 확대
자녀교육	2일 (세자녀 이상 1일 가산)	0	0	신설
자녀군입영	1일	-	0	신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제17조)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서울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 불임치료휴가, 장기재직특별휴가 등이 있음.

가. 임신공무원 등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등 (안 제8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안제24조제4항)

○ 안 제8조제4항과 안 제15조제3항 등은 임신 공무원과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 출장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과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시간외 근무를 제한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추진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② (생략) <신 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24조(특별휴가)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최근 세종시에서 30대 다자녀 여성 공무원이 일요일 출근 후 청사내에서 사망하게 된 사건[1] 등의 발생 및 출산율이 지속 저하되어 모성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동 개정안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헌법」 제36조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그 동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남성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출산 이후 육아를 여성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남성도 공동으로 육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육아에 대한 공동양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시 출산율[2]은 전국 최저수준으로 도시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출산지원정책의 선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증가하는 여성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자녀 양육 휴가 신설(안 제24조제12항)

○ 안 제24조제11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추진안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 등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신 설>	제24조(특별휴가)①~⑪ 생략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1) 국민일보(2017.01.15), 세종청사서… 30대 女사무관 의문사

2) 한국경제(2014.9.4), 서울 출산율 전국 17개 시도중 꼴찌, 전남 충남 높아

○ 개정안은 학부모인 공무원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24조제11항)

○ 안 제24조제11항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⑩ 생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①~⑩ 생략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현재 서울시와 세종시, 경상남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는 동 휴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자녀입영휴가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의 확대(안 별표 3)

○ 안 별표 3은 현재 장례문화가 통례적으로 3일장인 점을 감안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17개 시·도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이미 동 경조사 휴가를 3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부모 사망시의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것은 장례문화의 실소요일수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특성에도 부합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검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본문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11항부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② (생략) <신 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